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재난 발생 시 소방청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을 위하여 하부조직별로 분산된 상황관리 기능을 본청 119종합상황실로 통합하고, 데이터 분석 및 활용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이원화되어 있는 데이터 행정 기능을 소방분석제도과로 일원화하며, 자체 조직진단을 통한 인력 효율화 방안으로 자체 통합활용정원(소방위 1명, 소방장 2명)을 감축하여 국민생명 보호를 위한 119구급 서비스 향상 등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는 내용으로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2. 12.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하부조직별로 분산된 상황관리 기능 통합을 위해 중앙119구조본부 119구조상황실 인력 6명(소방장 3명, 소방교 3명)을 본청 119종합상황실로 이체하고, 관리운영직군 공무원 정원 1명(9급 1명)을 행정·기술직군 공무원 정원 1명(9급 1명)으로 전환하며, 소방분석제도과 신설기구 평가 결과에 따라 평가 기간을 2년 연장 및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해 부서별 사무분장을 일부 조정하려는 것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2022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행정안전부령 제 호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항제5호 중 “지도”를 “지도에 관한 사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안내”를 “안내에 관한 사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15호 중 “중앙구급상황관리센터의 운영 및 시·도”를 “시·도”로 한다.

제4조제3항에 제16호 및 제1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 청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계획의 수립·추진 및 평가 등 총괄

17. 청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추진 및 데이터 관리 등 총괄

제4조의2제3항제8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13호 중 “119항공운항관제실의 운영”을 “중앙 및 시·도 119항공운항관제 정책”으로 하며, 같은 항 제14호 및 제15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17호 중 “소방드론”을 “소방무인비행장치”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제27호 및 제28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6조제3항제1호 중 “지휘·조정·통제”를 “중앙119구조본부 소방력에 대한 지원·조정”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재난 진행상황 · 피해 등 정보의 수집 · 전파

제6조제4항제10호부터 제13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에 제16호부터 제20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 재난현장에서 중앙119구조본부 소방력에 대한 현장지휘소의 설치
· 운영

17. 국가 주요행사에서의 인명구조 · 구급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18. 국외 소방기관 및 구조 관련 국제기구와의 교류 · 협력 및 지원 활동

19. 대한민국 119국제구조대의 재난현장 파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0. 국외 소방 및 재난 정보의 수집 · 전파

별표 3 중 총계 “267”을 “274”로 하고, 소방공무원 계 “231”을 “236”으로 하며, 소방경 “56”을 “57”로 하고, 소방위 “63”을 “62”로 하며, 소방장 “16”을 “18”로 하고, 소방교 “6”을 “9”로 하며, 일반직 계 “36”을 “38”로 하고, 행정사무관 · 공업사무관 · 의무사무관 · 간호사무관 · 시설사무관 · 방재안전사무관 · 전산사무관 · 방송통신사무관 · 기록연구관 · 공업연구관 · 시설연구관 또는 소방령 “9”를 “10”으로 하며, 행정주사 · 공업주사 · 임업주사 · 간호주사 · 시설주사 · 방재안전주사 · 전산주사 · 방송통신주사 · 기록연구사 · 시설연구사 또는 소방경 “8”을 “9”로 하고, 행정서기 · 공업서기 · 간호서기 · 시설서기 · 방재안전서기 · 전산서기 · 방송통신서기 또는 소방교 1 다음에 “행정서기보 · 공업서기보 · 시설서기보 · 방재안전서기보 · 전산서기보 · 방송통신서기보 또는 소방사 5”를 신설하

며, “행정서기보 · 공업서기보 · 시설서기보 · 방재안전서기보 · 전산서기보 · 방송통신서기보 · 사무운영서기보 또는 소방사 5”를 삭제한다.

별표 3의2 중 총계 “267”을 “274”로 하고, 소방공무원 계 “231”을 “236”으로 하며, 소방경 “58”을 “59”로 하고, 소방위 “61”을 “60”으로 하며, 소방장 “15”를 “17”로 하고, 소방교 “6”을 “9”로 하며, 일반직 계 “36”을 “38”로 하고, 행정사무관 · 공업사무관 · 의무사무관 · 간호사무관 · 시설사무관 · 방재안전사무관 · 전산사무관 · 방송통신사무관 · 기록연구관 · 공업연구관 · 시설연구관 또는 소방령 “9”를 “10”으로 하며, 행정주사 · 공업주사 · 임업주사 · 간호주사 · 시설주사 · 방재안전주사 · 전산주사 · 방송통신주사 · 기록연구사 · 시설연구사 또는 소방경 “8”을 “9”로 하고, 행정서기 · 공업서기 · 간호서기 · 시설서기 · 방재안전서기 · 전산서기 · 방송통신서기 또는 소방교 2 다음에 “행정서기보 · 공업서기보 · 시설서기보 · 방재안전서기보 · 전산서기보 · 방송통신서기보 또는 소방교 4”를 신설하며, “행정서기보 · 공업서기보 · 시설서기보 · 방재안전서기보 · 전산서기보 · 방송통신서기보 · 사무운영서기보 또는 소방사 4”를 삭제한다.

별표 5 중 총계 “470”을 “463”으로 하고, 소방장 “78”을 “74”로 하며, 소방교 “96”을 “93”으로 한다.

별표 5의3을 삭제한다.

별표 6 1)의 평가기간란 중 “2022년 12월 31일”을 “2024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리운영직군 공무원의 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관리운영직군 공무원 정원 1명(9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행정·기술직군 공무원 정원 1명(9급 1명)의 정원을 대체하여 있는 것으로 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119대응국) ① ~ ④ (생략)	제3조(119대응국)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119구급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⑤ ----- -----.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5. 응급환자에 대한 안내·상담 및 <u>지도</u>	5. ----- -- <u>지도에 관한 사항</u>
6. 응급환자를 이송 중인 사람에 대한 응급처치의 지도 및 이송병원 <u>안내</u>	6. ----- ----- <u>안내에 관한 사항</u>
7. ~ 14. (생략)	7. ~ 14. (현행과 같음)
15. <u>중앙 구급상황관리센터의 운영 및 시·도 구급상황관리센터의 지원</u>	15. <u>시·도</u> ----- -----
16. ~ 18. (생략)	16. ~ 18. (현행과 같음)
제4조(화재예방국) ①·② (생략)	제4조(화재예방국)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소방분석제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③ ----- -----.
1. ~ 15. (생략)	1. ~ 15. (현행과 같음)
<신 설>	16. <u>청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계획의 수립·추진 및 평가 등 총괄</u>
<신 설>	17. <u>청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u>

④·⑤ (생략) 제4조의2(장비기술국) ①·② (생략) ③ 소방항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7. (생략) 8. <u>육상에서의 항공기 사고 수색구조에 관한 사항</u> 9. ~ 12. (생략) 13. <u>119항공운항관제실의 운영에 관한 사항</u> 14. <u>소방항공기의 출동·조정·통제에 관한 사항</u> 15. <u>소방항공기 운항 통합관제에 관한 사항</u> 16. (생략) 17. <u>소방드론 운영에 관한 사항</u> ④ 정보통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26. (생략) 27. <u>청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계획의 수립·추진 및 평가 등 총괄</u>	<u>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추진 및 데이터 관리 등 총괄</u> ④·⑤ (현행과 같음) 제4조의2(장비기술국)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1. ~ 7. (현행과 같음) <삭제> 9. ~ 12. (현행과 같음) 13. <u>중앙 및 시·도 119항공운항관제 정책</u>----- ----- <삭제> <삭제> 16. (현행과 같음) 17. <u>소방무인비행장치</u> ----- -----. 1. ~ 26. (현행과 같음) <삭제>		28. <u>청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u> <u>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추진 및 데이터 관리 등 총괄</u> ⑤ (생략) 제6조(중앙119구조본부) ①·② (생략) ③ 119구조상황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중앙119구조본부장을 보좌한다. 1. 재난현장에서 <u>지휘·조정·통제</u> 기능 2. 재난현장에서 <u>현장지휘본부의 설치·운영</u> 3. 삭제 4. <u>재난진행상황 파악·전파 등 상황관제 및 재난피해 정보의 수집·분석·전파</u> 5. ~ 18. (생략) ④ 기획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9. (생략) 10. <u>국가 주요행사에서의 인명구조·구급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u> 11. <u>국외 소방기관 및 구조 관련</u>	<삭제> ⑤ (현행과 같음) 제6조(중앙119구조본부)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1. ----- <u>중앙119구조본부 소방력에 대한 지원·조정</u> ----- <삭제> 4. <u>재난 진행상황·피해 등 정보의 수집·전파</u> 5. ~ 18. (현행과 같음) ④ ----- -----. 1. ~ 9. (현행과 같음) <삭제> <삭제>
--	---	--	--	--

<u>국제기구와의 교류·협력 및 지원 활동</u>	
<u>12. 대한민국 119국제구조대의 재난현장 파견 및 운영에 관 한 사항</u>	<u><삭 제></u>
<u>13. 국외 소방 및 재난 정보의 수집·전파</u>	<u><삭 제></u>
14. (생 략)	14. (현행과 같음)
⑤ 특수대응훈련과장은 다음 사 항을 분장한다.	⑤ ----- -----.
1. ~ 15. (생 략)	1. ~ 15. (현행과 같음)
<u><신 설></u>	<u>16. 재난현장에서 중앙119구조 본부 소방력에 대한 현장지휘 소의 설치·운영</u>
<u><신 설></u>	<u>17. 국가 주요행사에서의 인명 구조·구급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u>
<u><신 설></u>	<u>18. 국외 소방기관 및 구조 관련 국제기구와의 교류·협력 및 지원 활동</u>
<u><신 설></u>	<u>19. 대한민국 119국제구조대의 재난현장 파견 및 운영에 관 한 사항</u>
<u><신 설></u>	<u>20. 국외 소방 및 재난 정보의 수집·전파</u>
⑥·⑦ (생 략)	⑥·⑦ (현행과 같음)

신·구정원대비표

[별표 3]

소방청 공무원 정원표(제9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총계	<u>267</u>	<u>274</u>	+7
소방공무원 계	<u>231</u>	<u>236</u>	+5
·	·	·	
·	·	·	
소방경	<u>56</u>	<u>57</u>	+1
소방위	<u>63</u>	<u>62</u>	-1
소방장	<u>16</u>	<u>18</u>	+2
소방교	<u>6</u>	<u>9</u>	+3
일반직 계	<u>36</u>	<u>38</u>	+2
·	·	·	
·	·	·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의무 사무관·간호사무관·시설사무 관·방재안전사무관·전산사무 관·방송통신사무관·기록연구 관·공업연구관·시설연구관 또는 소방령	<u>9</u>	<u>10</u>	+1

행정주사·공업주사·임업주사 · 간호주사·시설주사·방재안전주사·전산주사·방송통신주사·기록연구사·시설연구사 또는 소방경	<u>8</u>	<u>9</u>	+1
·	·	·	
·	·	·	
행정서기보·공업서기보·시설서기보·방재안전서기보·전산서기보·방송통신서기보 또는 소방사	<신 설>	<u>5</u>	+5
행정서기보·공업서기보·시설서기보·방재안전서기보·전산서기보·방송통신서기보·사무운영서기보 또는 소방사	<u>5</u>	<삭 제>	-5
·	·	·	
·	·	·	

■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3의2]

소방청 공무원 정원표(제9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총계	<u>267</u>	<u>274</u>	+7
소방공무원 계	<u>231</u>	<u>236</u>	+5
·	·	·	
·	·	·	
소방경	<u>58</u>	<u>59</u>	+1
소방위	<u>61</u>	<u>60</u>	-1
소방장	<u>15</u>	<u>17</u>	+2
소방교	<u>6</u>	<u>9</u>	+3
일반직 계	<u>36</u>	<u>38</u>	+2
·	·	·	
·	·	·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의무사무관·간호사무관·시설사무관·방재안전사무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기록연구관·공업연구관·시설연구관 또는 소방령	<u>9</u>	<u>10</u>	+1

행정주사·공업주사·임업주사 ·간호주사·시설주사·방재안전주사·전산주사·방송통신주사·기록연구사·시설연구사 또는 소방경	<u>8</u>	<u>9</u>	+1
·	·	·	
·	·	·	
행정서기보·공업서기보·시설 서기보·방재안전서기보·전산 서기보·방송통신서기보·소방 사	<신 설>	<u>4</u>	+4
행정서기보·공업서기보·시설 서기보·방재안전서기보·전산 서기보·방송통신서기보·사무 운영서기보 또는 소방사	<u>4</u>	<삭 제>	-4
·	·	·	
·	·	·	

[별표 5]

중앙119구조본부 공무원 정원표(제10조제2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		· <u>470</u>	· <u>463</u>	-7
	·		·	·	
	·		·	·	
소방장			<u>78</u>	<u>74</u>	-4
소방교			<u>96</u>	<u>93</u>	-3
	·		·	·	
	·		·	·	